

## 산림청 고시 제2011- 42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산림청장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관련 [별표 4의3] 에서 정한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목축적 조사항목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적용 특례)**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2.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의3]의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
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 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①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자가 수수료를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한 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한국산지보전협회는 신청자가 조사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와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환급)** ①한국산지보전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①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와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입목축적조사서, 재적조사서, 매목조사야장, 표본점배치 위치도, 수고  
조사서, 수고조사야장 등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2.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
3. 표고분석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
4. 그 밖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②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  
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의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18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1. 6. 30. >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	-	0.5
나. 적합성					
○ 보전산지 등의 편입	-	-	1	-	0.5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1	-	-	0.5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의 영향	-	-	1	-	1
○ 산지의 평균경사도	-	-	1	-	0.5
○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1	2	현지조사 + 내업(3일)
○ 보전산지 편입비율	-	-	1	-	0.5
다. 환경성					
○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의 편입	-	1	-	-	0.5
○ 형질우량 산림의 원형보존	-	1	-	-	0.5
3.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 비고

1.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소요일수는 실제 소요된 현지조사일수(3인1조로 1일 5개 표준지(400m<sup>2</sup>) 조사 기준)와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내업일수(3일)를 합한 일수로 한다.
2. 조사대상 산지의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2. 법 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및 법 제 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	-	0.5
나. 적합성					
○ 행위제한	-	1	-	-	0.5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대한 영향	-	1	-	-	1
○ 우량한 산림의 편입	-	-	1	-	0.5
○ 재해발생 우려	-	1	-	-	1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	-	1	-	0.5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도	-	-	1	-	0.5
- 산지전용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1	2	현지조사 + 3일(내업)
- 50년생 이상의 활엽수림 편입비율	-	-	1	-	0.2
○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방법의 적정성					
-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목적 사업 시행 가능성	-	1	-	-	0.5
-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					
- 기존지형 유지관련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	1	-	-	0.5
- 토질에 따른 경사도·높이 등 사면처리계획	-	1	-	-	0.5
-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조치계획	-	-	-	1	0.2
- 산지전용지의 표고분석도	-	-	1	-	0.5
- 차폐림 조성계획	-	-	1	-	0.2
- 원형 및 조성 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	1	-	1	0.2
- 해안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의 편입여부	-	-	-	1	0.1
- 분묘의 편입	-	-	1	-	0.5
- 해안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	-	-	1	-	0.1
- 보전산지 등의 편입	-	-	1	-	0.2
- 수림대 조성	-	-	1	-	0.2
- 토석이동량의 적정성	1	-	-	-	0.5
-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물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	1	1	-	2
○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	-	1	-	0.5
다. 환경성					
○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1	-	-	1	0.5
3.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 비고

1.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소요일수는 실제 소요된 현지조사일수(3인1조로 1일 5개 표준지(400m<sup>2</sup>) 조사 기준)와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내업일수(3일)를 합한 일수로 한다.
2. 조사대상 산지의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인일)

규 모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준면적(30ha) ~ 1.5배	1.00	1.00	1.00	1.00
1.5배 초과 ~ 2.0배	1.07	1.07	1.12	1.12
2.0배 초과 ~ 3.0배	1.21	1.21	1.31	1.31
3.0배 초과 ~ 5.0배	1.42	1.42	1.61	1.61
5.0배 초과 ~ 7.0배	1.58	1.58	1.84	1.84
7.0배 초과 ~ 10배	1.76	1.76	2.11	2.11
10배 초과 ~ 15배	2.00	2.00	2.49	2.49
15배 초과 ~ 20배	2.18	2.18	2.79	2.79
20배 초과 ~ 25배	2.34	2.34	3.05	3.05
25배 초과 ~ 30배	2.48	2.48	3.28	3.28
30배 초과	2.60	2.60	3.49	3.49

※ 비고

1. 할증표의 적용기준이 되는 면적은 30만제곱미터이다.
2. 조사항목 중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제10조 제6항 관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신청구분	[ ] 지역·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내역	번지 외 필지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신청목적				

조 사 결 과

입목축적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m'	m'		
평 균 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도	도		
표 고 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m	m		

기타사항

종합의견

붙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관련 [별표4의3]에서 정한 조사항목별  
세부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년 월 일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직인